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공 4블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기	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수도권(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	거주의무기간 분양: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l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ı E#	보고그 저人이	일반공급 1	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저스이 다쳤	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一下正	합구시포함증포될	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해당지역	기타지역	글인당대 2분기		시글파크	시뉴납도	계탁세별			
일정	정 24.04.19.(금) 24.04.29.(월		.04.29.(월)	24.04.30.(화)	24.04.30.(화)	24.05.02.(목) 24.0	5 (19 (ヱ)	24.05.13.(월)~ 24.05.18.(토)	24.05.21.(화)~ 24.05.2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1670-3053)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지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_	-	-	필요	-	-	_
소득 또는 자산기준	_	-	적용	_	적용	_	_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점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트병고그/이바고그 그부 언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등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9/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시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Ш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7 8	E 増고그	일반공급	급 1순위	이바고그 2스이	다쳐지바ㅠ	니르저스	계약체결	
구 분	특별공급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제결 	
일 정	24.04.29.(월)	24.04.30.(화) 24.04.30.(화)		24.05.02.(목)	24.05.09.(목)	24.05.13.(월) ~ 24.05.18.(토)	24.05.21.(화) ~ 24.05.2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31-44)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	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에서 공급하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전매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Ш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 16885호(2024.04.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23-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10개동, 총 1,089세대

[특별공급 533세대 : 일반(기관추천) 107세대. 다자녀가구 107세대. 신혼부부 194세대. 노부모부양 30세대. 생애최초 9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2	F택공급면적((m²)	7151						특별공급	서대수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Й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536A	84A	84.9536	29.0367	113.9903	69.2225	183.2128	49.8037	601	60	60	108	18	54	300	301	25
		02	084.8661B	84B	84.8661	29.2085	114.0746	69.1512	183.2258	49.7524	174	17	17	31	5	15	85	89	7
	2024000156	03	084.9868C	84C	84.9868	30.2638	115.2506	69.2497	184.5003	49.8232	49	4	4	8	1	4	21	28	2
민영 주택	2024000156	04	084.9944D	84D	84.9944	30.3326	115.3270	69.2558	184.5828	49.8277	165	16	16	29	4	14	79	86	7
		05	084.9904E	84E	84.9904	29.8828	114.8732	69.2526	184.1258	49.8253	50	5	5	9	1	4	24	26	2
		06	084.7145F	84F	84.7145	29.3372	114.0517	69.0278	183.0795	49.6636	50	5	5	9	1	4	24	26	2
		합 계									1,089	107	107	194	30	95	533	556	45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각 동별로(층수, 코어에 따른 차이를 포함)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536A	084.9536A 084.8661B		084.9944D	084.9904E	084.7145F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0111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약식 표기	동별/라인별	구분(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네시미	신국미	71	(계약시)	(30일 내)	2024-10-31	2025-03-31	2025-08-31	2026-04-30	2026-06-30	2026-11-30	HT시(6) 전
	1001동 2,3,5호,	1층	24	245,513,768	357,966,232	603,480,000	30,174,000	30,174,000	60,348,000	60,348,000	60,348,000	60,348,000	60,348,000	60,348,000	181,044,000
	1001등 2,3,3호, 1002동 1,3,4호,	2층	25	254,053,130	370,416,870	624,470,000	31,223,000	31,223,000	62,447,000	62,447,000	62,447,000	62,447,000	62,447,000	62,447,000	187,342,000
	1003동 1,2,3호,	3층	25	262,206,003	382,303,997	644,510,000	32,225,000	32,225,000	64,451,000	64,451,000	64,451,000	64,451,000	64,451,000	64,451,000	193,354,000
	1004동 1,2,4호	4층	25	267,637,184	390,222,816	657,860,000	32,893,000	32,893,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197,358,000
84A	1005동 2,3,5호, 1006동 3,4호,	5~9층	125	270,354,808	394,185,192	664,540,000	33,227,000	33,227,000	66,454,000	66,454,000	66,454,000	66,454,000	66,454,000	66,454,000	199,362,000
	1007동 2,3호,	10~14층	125	273,072,433	398,147,567	671,220,000	33,561,000	33,561,000	67,122,000	67,122,000	67,122,000	67,122,000	67,122,000	67,122,000	201,366,000
	1008동 1,2,4호,	15~19층	120	274,626,523	400,413,477	675,040,000	33,752,000	33,752,000	67,504,000	67,504,000	67,504,000	67,504,000	67,504,000	67,504,000	202,512,000
	1009동 2,4호, 1010동 3호	20~24층	111	276,180,614	402,679,386	678,860,000	33,943,000	33,943,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203,658,000
	1010은 3호	25층이상	21	276,180,614	402,679,386	678,860,000	33,943,000	33,943,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67,886,000	203,658,000
		1층	7	239,297,406	348,902,594	588,200,000	29,410,000	29,41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58,820,000	176,460,000
	1001동 4호,	2층	7	247,446,211	360,783,789	608,230,000	30,411,000	30,411,000	60,823,000	60,823,000	60,823,000	60,823,000	60,823,000	60,823,000	182,470,000
	1001등 4호, 1002동 2호,	3층	7	255,212,596	372,107,404	627,320,000	31,366,000	31,366,000	62,732,000	62,732,000	62,732,000	62,732,000	62,732,000	62,732,000	188,196,000
	1002당 2호,	4층	7	260,651,913	380,038,087	640,690,000	32,034,000	32,034,000	64,069,000	64,069,000	64,069,000	64,069,000	64,069,000	64,069,000	192,208,000
84B	1005동 4호,	5~9층	35	263,365,469	383,994,531	647,360,000	32,368,000	32,368,000	64,736,000	64,736,000	64,736,000	64,736,000	64,736,000	64,736,000	194,208,000
	1006동 2호,	10~14층	35	266,087,162	387,962,838	654,050,000	32,702,000	32,702,000	65,405,000	65,405,000	65,405,000	65,405,000	65,405,000	65,405,000	196,216,000
	1008동 3호, 1009동 3호	15~19층	35	267,637,184	390,222,816	657,860,000	32,893,000	32,893,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65,786,000	197,358,000
		20~24층	35	268,804,786	391,925,214	660,730,000	33,036,000	33,036,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198,220,000
		25층이상	6	268,804,786	391,925,214	660,730,000	33,036,000	33,036,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66,073,000	198,220,000
		1층	1	239,643,212	349,406,788	589,050,000	29,452,000	29,452,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58,905,000	176,716,000
		2층	2	247,405,528	360,724,472	608,130,000	30,406,000	30,406,000	60,813,000	60,813,000	60,813,000	60,813,000	60,813,000	60,813,000	182,440,000
		3층	2	255,558,401	372,611,599	628,170,000	31,408,000	31,408,000	62,817,000	62,817,000	62,817,000	62,817,000	62,817,000	62,817,000	188,452,000
		4층	2	261,001,786	380,548,214	641,550,000	32,077,000	32,077,000	64,155,000	64,155,000	64,155,000	64,155,000	64,155,000	64,155,000	192,466,000
84C	1003동 5호, 1006동 1호	5~9층	10	263,715,343	384,504,657	648,220,000	32,411,000	32,411,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194,466,000
	10002 12	10~14층	10	266,437,035	388,472,965	654,910,000	32,745,000	32,745,000	65,491,000	65,491,000	65,491,000	65,491,000	65,491,000	65,491,000	196,474,000
		15~19층	10	267,995,194	390,744,806	658,740,000	32,937,000	32,937,000	65,874,000	65,874,000	65,874,000	65,874,000	65,874,000	65,874,000	197,622,000
		20~24층	10	269,154,660	392,435,340	661,590,000	33,079,000	33,07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198,478,000
		25층이상	2	269,154,660	392,435,340	661,590,000	33,079,000	33,07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66,159,000	198,478,000
		1층	7	239,602,528	349,347,472	588,950,000	29,447,000	29,447,000	58,895,000	58,895,000	58,895,000	58,895,000	58,895,000	58,895,000	176,686,000
	1001도 1층	2층	7	247,755,402	361,234,598	608,990,000	30,449,000	30,44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60,899,000	182,698,000
	1001동 1호, 1002동 5호,	3층	7	255,517,718	372,552,282	628,070,000	31,403,000	31,403,000	62,807,000	62,807,000	62,807,000	62,807,000	62,807,000	62,807,000	188,422,000
	1002등 3호,	 4층	7	260,961,104	380,488,896	641,450,000	32,072,000	32,072,000	64,145,000	64,145,000	64,145,000	64,145,000	64,145,000	64,145,000	192,436,000
84D	1006동 5호,	5~9층	35	263,674,660	384,445,340	648,120,000	32,406,000	32,406,000	64,812,000	64,812,000	64,812,000	64,812,000	64,812,000	64,812,000	194,436,000
	1007동 1호,	10~14층	35	266,396,352	388,413,648	654,810,000	32,740,000	32,740,000	65,481,000	65,481,000	65,481,000	65,481,000	65,481,000	65,481,000	196,444,000
	1009동 1호,	15~19층	35	267,954,511	390,685,489	658,640,000	32,932,000	32,932,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197,592,000
	1010동 1호	20~24층	28	269,113,977	392,376,023	661,490,000	33,074,000	33,074,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198,448,000
		25층이상	4	269,113,977	392,376,023	661,490,000	33,074,000	33,074,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66,149,000	198,448,000
0.45	10075 155	1층	2	245,822,959	358,417,041	604,240,000	30,212,000	30,212,000	60,424,000	60,424,000	60,424,000	60,424,000	60,424,000	60,424,000	181,272,000
84E	1007동 4,5호	2층	2	253,971,764	370,298,236	624,270,000	31,213,000	31,213,000	62,427,000	62,427,000	62,427,000	62,427,000	62,427,000	62,427,000	187,282,000

		3층	2	262,124,637	382,185,363	644,310,000	32,215,000	32,215,000	64,431,000	64,431,000	64,431,000	64,431,000	64,431,000	64,431,000	193,294,000
		4층	2	267,954,511	390,685,489	658,640,000	32,932,000	32,932,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65,864,000	197,592,000
		5~9층	10	270,659,931	394,630,069	665,290,000	33,264,000	33,264,000	66,529,000	66,529,000	66,529,000	66,529,000	66,529,000	66,529,000	199,588,000
		10~14층	10	273,381,623	398,598,377	671,980,000	33,599,000	33,599,000	67,198,000	67,198,000	67,198,000	67,198,000	67,198,000	67,198,000	201,594,000
		15~19층	10	274,545,157	400,294,843	674,840,000	33,742,000	33,742,000	67,484,000	67,484,000	67,484,000	67,484,000	67,484,000	67,484,000	202,452,000
		20~24층	10	276,099,248	402,560,752	678,660,000	33,933,000	33,933,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203,598,000
		25층이상	2	276,099,248	402,560,752	678,660,000	33,933,000	33,933,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67,866,000	203,598,000
		1층	2	238,906,849	348,333,151	587,240,000	29,362,000	29,362,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58,724,000	176,172,000
		2층	2	246,681,370	359,668,630	606,350,000	30,317,000	30,317,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60,635,000	181,906,000
		3층	2	254,826,107	371,543,893	626,370,000	31,318,000	31,318,000	62,637,000	62,637,000	62,637,000	62,637,000	62,637,000	62,637,000	187,912,000
		4층	2	260,261,356	379,468,644	639,730,000	31,986,000	31,986,000	63,973,000	63,973,000	63,973,000	63,973,000	63,973,000	63,973,000	191,920,000
84F	1004동 3호 1010동 2호	5~9층	10	262,978,980	383,431,020	646,410,000	32,320,000	32,320,000	64,641,000	64,641,000	64,641,000	64,641,000	64,641,000	64,641,000	193,924,000
	10108 21	10~14층	10	265,696,605	387,393,395	653,090,000	32,654,000	32,654,000	65,309,000	65,309,000	65,309,000	65,309,000	65,309,000	65,309,000	195,928,000
		15~19층	10	266,860,138	389,089,862	655,950,000	32,797,000	32,797,000	65,595,000	65,595,000	65,595,000	65,595,000	65,595,000	65,595,000	196,786,000
		20~24층	10	268,414,229	391,355,771	659,770,000	32,988,000	32,988,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197,932,000
		25층이상	2	268,414,229	391,355,771	659,770,000	32,988,000	32,988,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65,977,000	197,932,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집행하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충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충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 10. 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	구가유공자 -	12	4	1	3	1	1	22
	장기특	복무 제대군인	12	3	-	3	1	1	20
	10년 이	상 장기복무군인	12	3	1	3	1	1	2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	기업 근로자	12	3	1	3	1	1	21
	장애인	인천광역시	8	2	1	2	1	1	15
		서울특별시	2	1	-	1	-	-	4
		경기도	2	1	-	1	_	_	4
	인천광역	시 거주자(50%)	30	9	2	8	3	3	5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30	8	2	8	2	2	52
신 <u>혼</u> !	부부 특별공급		108	31	8	29	9	9	194
노부모	18	5	1	4	1	1	30		
생애:	최초 특별공급		54	15	4	14	4	4	95
	합 계				21	79	24	24	53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IV −1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0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배점

m 저하모	ᄎᄢᅒ	배점기준		шп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네고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1년 이상 ~ 5년 미만	10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사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 -3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19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자녀기준

_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 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11 -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4.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E 7 H		비율	소득금액					
	소득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수심중답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의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초지법 동일한 * 공부상 * 종중소 입주(0	경우는 제외 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 한 주소인 경우 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제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는 경우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 수 있으며, 그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u> 7년 이상 ~ 8년 미만</u>	16	4 PH	25				
		_	<u> </u>	5	4명	25				
선정방법	② 부양가족수	35	1명 2명	15	5명 6명 이상	35				
		_	 2명 3명	20	08 ଏଥ	3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일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S								
			= .= = = =							
비고			건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W	-5
ıv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5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자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3단계 우선공급(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4단계 일반공급(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1인 가구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첩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첩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고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4.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가구당 웤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立ってて こうしゅう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성	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 All	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건 1	경이일인중합, 일인중합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병	y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구백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역 * 「농지법」자 * 「초지법」자 주소인 경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구체적인	우는 제외 네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네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 네우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는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우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나,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чв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0	베치금액]					
청약통장	구 분	그 밖의 광역시(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	,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①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② 가점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성	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OTT-7/12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0 X .1 1 Z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③입주자저축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비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2 + 3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한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집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VI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서비스 이용은 선택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	(민영주택) 고단지 청약연습	 용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	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조회기간 : 2024.05.09.(목) ~ 2024.05.18(토) (10일간)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제공일시 : 2024.05.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저다 다쳤다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	
경당 당점시 	일반공급	2024년 05월 13일(월) ~ 2024년 05월 18일(토)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31-44	• 사전방문예약제
01111 EL-171	특별공급 6일간, (10:00 ~ 17:0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홈페이지	
예비 당첨자	일반공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9/main/index.do)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광역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차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의신진단서 본인 또는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구분	서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되게비스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메구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ᄲᄱᅿᅮ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구분	서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11174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ᆜ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구분	서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당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식게미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일반공급 당첨자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04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 받은자	보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본인외 모두		0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제3자)		0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3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23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1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 전년도(23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23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23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자 영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와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8 업 자	법인 대표자	① 전년도(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23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2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22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2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22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근호	기타 E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www.iros.g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 (해당	년 :가 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근무자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단신부임)		0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2024. 05.21.(화) ~ 2024. 05.23.(목), 3일간 / 10:00 ~ 17:00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31-44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용도 : 아파트계약용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 계약시			는 문헌사용사고확인사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11 1- 1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0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견본주택에 비치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대리인			7 0 7 (5 5 7) 0 0 7 7 1 5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 3자)		0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CB+0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0	위임장	_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 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선' 기재금액이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9981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단지·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단지 10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단지 1015동 201호 홍길동 : 2150201홍길동)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⑤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햇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점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인지세에 한해 1/2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제 키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불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 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망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 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 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 대출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대납하되,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를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및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I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삼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시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채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이난 지역 또는 만의 행장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가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괴성숙인이 가주한 것은 상육인이 기축한 건물이 가수 생용시키 기축을 보면 등록 하면 한 전투 기축에 이를 보통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의 있는 경우 전체 수업으로 받아 간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육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시업자가 그 소속 근로지역 소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간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육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숙한 제단가 20체급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발안전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한한다)이 주택 또는 발안전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제존속과 및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보안권속) 보안가는 경우 전용 기관 보안가는 기관					

Χ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구력8(각각표기)			계약시	입주지정일	미포
84A	확장형	8,200,000	820,000	7,380,000	
84B		8,200,000	820,000	7,380,000	
84C		8,300,000	830,000	7,470,000	
84D		8,400,000	840,000	7,560,000	
84E		8,400,000	840,000	7,560,000	
84F		8,200,000	820,000	7,38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계약금	70084	465101 01 20517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잔금	국민은행	465101-01-305173		

- 발코니확장 계약(공급)주체 및 확장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입니다.
- 견본주택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단지·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단지 10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단지 1015동 201호 홍길동 : 2150201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대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위치에따라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발코니 창 없이 내부 분합문만 설치되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 하부에 위치하는 발코니 확장 세대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합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주방가구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거실우물천장은 기본제공으로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설치위치 및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및 냉매배관 추가

[단위 : 원, VAT포함]

항목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실니	기	적용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71).	소)			계약시	입주지정일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5,900,000	590,000	5,310,000	
	044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100,000	810,000	7,290,000	
	84A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300,000	730,000	6,57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0,700,000	1,070,000	9,630,00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6,000,000	600,000	5,400,000	
	04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300,000	830,000	7,470,000	
	84B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600,000	760,000	6,84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0,900,000	1,090,000	9,810,00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6,200,000	620,000	5,580,000	
	04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700,000	870,000	7,830,000	
	84C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800,000	780,000	7,02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1,300,000	1,130,000	10,170,000	
시스템에어컨	84D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6,100,000	610,000	5,490,00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600,000	860,000	7,74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700,000	770,000	6,93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1,200,000	1,120,000	10,080,000	
	045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5,900,000	590,000	5,310,00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000,000	800,000	7,200,000	
	84E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500,000	750,000	6,75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0,600,000	1,060,000	9,540,000	
	045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6,000,000	600,000	5,400,000	
		삼성_무풍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400,000	840,000	7,560,000	
	84F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3실	3대	거실, 안방, 주방	7,600,000	760,000	6,840,000	
		삼성_인피니티 시스템에어컨	전실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0,900,000	1,090,000	9,81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함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세대내 냉매매입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선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 안방에만 시공됩니다.
- 냉매배관 위치 및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됩니다. 기 시공된 벽체 냉매매립함 위치에 대한 입주자별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 계획상의 이유로 유상옵션 계약 전 각 옵션 항목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78		비조니	ㅈ대청	7770	계약금(10%)	잔금(90%)	НЭ	
	구분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비고	
쿡탑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2IH+1HL, 블랙 상판)		300,000	30,000	270,000	_	
인덕션	3구 인덕션	삼성(화이트 상판)		1,500,000	150,000	1,350,000		
인탁신	3구 한탁신	엘지(화이트 상판)		1,700,000	170,000	1,530,000		
2조 FITLOI	ᄖᄭ거ᅖᄃᆁᆉᅥᄋᄑᆉ	삼성 (RF60B91R2AP, RQ33A74E1AP)		6,500,000	650,000	5,850,000		
2층 디자인	냉장고 + 팬트리장 + 오픈장	LG (M622GBB352, Z332GBB151)	전타입	7,100,000	710,000	6,390,000		
1	-ITLOUHTED 1 THE DITE	삼성 (RR40A7995AP, RZ34A7965AP, RQ34C7945AP)		5,600,000	560,000	5,040,000	_	
1포어 다	기자인냉장고 + 팬트리장	LG (BC1L2GB, BC1F2GB, BC1K2GB)		5,700,000	570,000	5,130,000		
식기세척기	모대트이처 기그때너미다	삼성 (DW60T7065SS)		900,000	90,000	810,000		
작기세작기	목대도어형 가구패널마감	엘지 (DUB22SB)		1,200,000	120,000	1,080,000		

※ 가전기기 선택옵션 유의사항

- 옵션 가전은 B2B 전용 모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B2C 모델과 외형은 같을 수 있지만, 내부 스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는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은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주방상판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 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하부장(여닫이 도어설치, 내부 선반 1개소)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냉장고 선택 시 팬트리장(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로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 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3) 현관중문 옵션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공급금액		잔금(90%)	비고	
1 -		^IIT 0	T70	0807	계약시	입주지정일	01 <u>11</u>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FIX+2SLIDING)	전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 현관중문 선택옵션 유의사항

- 현관 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개폐 방향은 해당 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천장 몰딩, 가구, 디딤판, 벽 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경량 벽으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 부위 신발장 케이싱 너비가 변경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주택과 다르게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디테일 등)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구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78		베티 그성		77704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미꼬	
침실	침실1 붙박이장	수납형(스윙도어형)	전타입	1,200,000	120,000	1,080,000		
	안방 붙박이장	수납형(스윙도어형)	84A, 84C, 84E	4,300,000	430,000	3,870,000		
안방	안방 스타일업	유리슬라이딩 도어 + 안방벽체 외부 인테리어 마감 + 쇼룸형 시스템가구 + 내부 디자인월 벽체 마감	84D	6,600,000	660,000	5,940,000		
			84A	1,900,000	190,000	1,710,000		
		드게 나를 보다이다. 이어드 포터형 원자네(^^^ 400) . 전시경	84B, 84C	2,100,000	210,000	1,890,000		
드레스룸	드레스룸 스타일업	스타일업 드레스룸 붙박이장 + 와이드 조명형 화장대(W:1,400) + 전신경 -	84E	2,700,000	270,000	2,430,000		
			84F	2,200,000	220,000	1,980,000		
			84A	700,000	70,000	630,000		
보드 패트리	복도팬트리 시스템가구		84B, 84C, 84F	400,000	40,000	360,000		
복도 팬트리	국보엔드니 시스템기구	복도팬트리 내부 수납 (시스템가구 포함)	84D	600,000	60,000	540,000		
			84E	900,000	90,000	810,000		
다이닝룸	다이닝룸 스타일업	복도팬트리 확장, 시스템가구 + 장식장 + 주방 간접조명형 우물천장	84A	3,400,000	340,000	3,060,000		

※ 가구 선택옵션 유의사항

- 붙박이 가구류 옵션 선택 시 가구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가 미 시공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 옵션 미 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규격 및 수납형태, 내부구성은 평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84F 타입은 안방 내 하향식피난구 진입동선의 간섭으로 안방 붙박이장 옵션 미 적용됩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의 옵션 선택 시 고급형 매입등이 적용됩니다.
- 84D 타입은 평면 특성상 안방 붙박이장 옵션 미 적용됩니다.

5) 마감재/설비/전기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고그그애	계약금(10%)	잔금(90%)	비고
		子 世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미끄
			84A, 84B, 84F	9,100,000	910,000	8,190,000	
	거실스타일업 - 벽 마감형 ①	아트월부위 세라믹타일 외 공용공간 디자인월 + 안방, 침실1,	84C	10,000,000	1,000,000	9,000,000	
	세라믹 + 디자인월 + 히든도어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84D	9,400,000	940,000	8,460,000	
			84E	8,800,000	880,000	7,920,000	
			84A, 84B	8,700,000	870,000	7,830,000	
	7111 FIOIO # 8171=1 @		84C	9,600,000	960,000	8,640,000	
거실	기실스타일업 - 벽 마감형 ② 디자인월 + 히든도어	공용 공간 전체 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84D	9,100,000	910,000	8,190,000	
			84E	8,400,000	840,000	7,560,000	
			84F	8,800,000	880,000	7,920,000	
		공용 공간 유럽산 바닥타일 (600 x 600)	84A, 84D, 84E	3,800,000	380,000	3,420,000	
	거실스타일업 - 바닥 마감형		84B	3,700,000	370,000	3,330,000	
			84C	3,900,000	390,000	3,510,000	
			84F	3,500,000	350,000	3,150,000	
		주방 벽/상판 ENG (최고급형), 미드웨이 ACC	84A, 84B	2,300,000	230,000	2,070,000	
	주방 스타일업		84C	1,800,000	180,000	1,620,000	
주방			84D	2,000,000	200,000	1,800,000	
			84E	2,100,000	210,000	1,890,000	
			84F	2,200,000	220,000	1,980,000	
	욕실스타일업 - 마감 고급형	유럽산 벽타일 (600 x 600) + 욕실선반 하부벽, 욕조 에이프런(욕실1) 엔지니어드스톤	전타입	1,400,000	140,000	1,260,000	
욕실	욕실스타일업 - 기기 국산고급형	국산고급 비데일체형 양변기(리모컨) +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솔리드 그레이)	전타입	3,900,000	390,000	3,510,000	
	욕실 스타일업 - 기기 외산고급형	외산고급 비데일체형 양변기(리모컨) +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우드베이지)	전타입	7,700,000	770,000	6,930,000	
			84A	4,500,000	450,000	4,05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침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84B, 84E	4,700,000	470,000	4,23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침실, 안방 커튼박스 간접등	84C, 84D	4,600,000	460,000	4,140,000	
		1.27 227 23 1.2 1 223	84F	4,400,000	440,000	3,960,000	

※ 마감재/설비/전기 옵션 선택품목 유의사항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됩니다.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사양 및 수전 높이,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한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은 타입별 주방가구 설치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이음부분이 노출되거나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 시공시 색상 및 무늬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타일의 재료적 특성상 각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에 시공되는 세라믹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의 디자인월 패널의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마감형의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①, ②은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거실 스타일업_벽마감형의 히든도어의 상세 및 디자인, 하드웨어(핸들, 정첩 등)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히든도어에 별도의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바닥마감형 옵션은 공용공간(거실, 복도, 주방)에만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바닥마감형 옵션 선택 시 침실 마루와 연결부위(실별 목창호 하단)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욕실 스타일업 마감고급화 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특성상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마감고급화 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타일은의 자재특성상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의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_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시 삭제되는 복도팬트리 벽체 마감의 차인액은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에 반영됩니다.

- 84A 타입의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과 조명스타일업 옵션 중복 선택 시 주방 간접조명형 우물천장이 포함됩니다.
- 84B 타입의 주방 장식장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 시 주방장식장으로 겹쳐지는 벽제 마감의 차인액은 주방장식장에 반영됩니다.
- 84C 타입의 주방 장식장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 시 삭제되는 벽제 마감의 차인액은 주방 장식장 옵션에 반영됩니다.
- 84F 타입의 거실 우물천장은 평면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실 아트월 전면부(1면)으로 구성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XI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계약금	국민은행	465101-01-30518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구시 선칙품축 답구 계약	잔금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405101-01-305160	게이미무공산산덕(무)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단지·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단지 1001동 1403호 홍길동 : 2011403홍길동 / 2단지 1015동 201호 홍길동 : 2150201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난간 등은 사용자 편의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후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조경석, 부대복리시설,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민 자녀의 초등학생은 현 통학구역 내 배치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학교군 개정을 추진 중으로서 인천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승인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설계 고지 내용
		• 당 사업장은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대상지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도로 및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 단지 동측에는 폭 30m도로, 단지 남측에는 폭 12m도로, 단지 서측에는 폭 15m도로, 단지 북측에는 폭 22m도로, 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근린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고,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12m도로변에는 준주거용지, 보행자도로, 주차장 용지가 위치하고,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연결녹지(약 25m폭)이 위치하고,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는 완충녹지가 위치하고,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준공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정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의 대지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 당 단지의 흙막이는 공사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층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의 근린공원 및 단지 주변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 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북측 및 서측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에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휀스설치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역경계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2022년 7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9호)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당 단지는 2023년 5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3년 2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통	인허가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며, 조경 관련 제반사항(식재, 시설물, 포장 및 동선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 모형, 세대 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략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84Am² 타입이 시공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라며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는 84㎡ 전 타입 BEIGE(베이지)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단위세대는 비확장 선택 시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 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단위세대 건립타입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POP에 명기된 실 치수는 확장형 평면도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가구 및 마감재 두께에 따라 내부치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삭하여 실측치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 마감재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현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공용홀에 설치된 욕실, 주방 기본형부스는 옵션 미 선택세대의 기본형 품목에 관한 마감재 안내를 위한 설치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R로 제작된 미건립 84Bm², 84Dm² 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영상물로 확장 유상옵션형으로 연출된 내용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CCTV. 소화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 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이며,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석재 및 강판이 적용되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BI 개소, 형태, 크기, 위치 및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확장 시 거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으로서 확장세대 거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이 조성되어 1001동, 1005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기당 국경의 결제한한 결제경기는 한경철 구 M합니다
- 주거동 피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 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각 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용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포켓정원 등),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물놀이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째,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12개소(공동주택용 10개. 근린생활시설용 2개소 별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나 동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인접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또는 인근 건축데크 하부 등 실내에 설치되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a)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워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 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 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됩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02동 옥상층, 1004동 옥상층, 1005동 옥상층, 1007동 옥상층, 1009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02동 옥상층, 1004동 옥상층, 1005동 옥상층, 1007동 옥상층, 1009동 옥상층/지하층 1002동, 1004동, 1006동, 1007동, 1009층 제연휀룸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1001동, 1005동, 1002동, 1003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단지출입구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 필로티 계획은 1003동 5호라인, 1008동 4호 라인에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시 크기,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동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 또는 별도의 주동출입구가 설치됩니다. 일부 주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됩니다.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시 크기,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 •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북측 및 남측, 서측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북측에 폭 22m도로(단지 외 도로) 및 서측에 폭 15m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1동 북서측 및 북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서측에 근린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남측에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 1001동 북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1동 남측에 맘스테이션이 1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호라인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북측에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남동측 데크하부에 단지 주출입구 및 남동측 데크하부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하부에 공동주택 정화조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옥상에 공동주택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북측 및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서측에 폭 15m도로(단지 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2동 남동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북동측 및 남동측에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서측에 근린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남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2동 데크하부 지하에 부대복리 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북동측에 맘스테이션이 1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호라인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데크하부 지하1층 1개층으로 설치된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에 의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하부에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하부에 제연훼룩,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하부에 재활용품 부리장이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2동 남측 데크하부에 단지 부출입구 및 남동측 데크하부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북측 및 남측, 필로티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서측에 폭 15m도로(단지 외 도로)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3동 서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북동측 및 남동측, 남서측에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서측에 근린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북측 및 남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3동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 ~ 지상 1층 2개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3동 하부에 우수저류조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서측 및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북서측에 폭 12m도로(단지 외 도로) 및 남서측에 폭 15m도로(단지 외 도로), 남측에 폭 12m도로(단지 외 도로)와 폭 60m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4동 남동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북측 및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서측에 연결녹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북서측에 근린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4동 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 ~ 지상 1층 2개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동측 및 서측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북측에 폭 22m도로(단지 외 도로)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5동 북서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남서측 및 남동측에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5동 동측 근린생활시설이 2개층 및 남동측에 어린이집이 1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하부에 제연휀룩,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북서측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5동 서측 데크하부에 단지 부출입구 및 남동측 데크하부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북측 및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동측 및 서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북동측 및 남동측,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6동 남동측에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북동측에 어린이집이 1층,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지하2~지상1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데크하부 지하 1층 1개층으로 설치된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골프연습장에 의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할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6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6동 북서측 및 남서측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북동측 및 북측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남측에 폭 12m도로(단지 외 도로)와 폭 60m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7동 북측 및 북동측에 휴게공간, 수경시설, 중앙광장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북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7동 데크하부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동측 및 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데크하부 지하층 1~2개층으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할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7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하부에 연료전지실이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동측 데크하부에 근린생활시설(썬큰타입)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북동측 및 서측, 필로티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북측에 폭 15m도로(단지 외 도로) 및 동측 30m도로(단지 외 도로)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8동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동측에 연결녹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남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8동 북측에 도로와 단지간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토목옹벽(조경석쌓기)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1008동 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정화조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옥상에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할 수 있습니다.
- 1008동 북서측 근린생활시설 차량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9동 북동측 및 서측, 남측,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9동 동측에 폭 12m도로(단지 외 도로)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9동 남동측 및 남서측, 북서측에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9동 동측에 연결녹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9동 북측 및 남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9동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 및 어린이집이 1층으로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9동 데크하부 지하1층 1개층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에 의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합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09동 하부에 정화조, 우수저류조 및 재활용품 분리장이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북측 및 남측, 데크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동측에 폭 12m도로(단지 외 도로)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0동 남측에 단지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북측 및 서측에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동측에 연결녹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북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0동 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데크하부 지하층 1~2개층으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저층세대(특히 1~3층 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할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0동 하부에 제연휀룸, 동통신실,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남측 데크하부에 보행자 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남서측 데크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하부에 공동주택 정화조 및 우수저류조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0동 옥상에 공동주택 정화조 배기덕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0동 남서측에 위치한 선큰은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된 선큰이며, 해당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북동측에 위치한 선큰은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된 선큰이며, 해당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7동 남서측에 위치한 선큰은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된 선큰이며, 해당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4동 북동측에 위치한 선큰은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된 선큰이며 해당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BI 사인물은 1008동, 1007동, 1004동, 1001동 측벽에 1010동 전면부에 각각 1개소 적용될 예정이며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측 5개층마다 1개소씩(동별/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 가능한 창호 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합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륨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한 제연휀륨 급기 DA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시공시 휀륨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각 동 1층에는 DA(제연 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계단실 창호는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공용홀의 개폐 가능한 창호(1층, 최상층 및 5개층마다 1개소)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 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됩니다. • 주동 코어벌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01동 2호 코어 1002동 1호 코어 1003동 2호 코어 1005동 2호 코어 1006동 1호 코어 1007동 2호 코어 1010동 코어는 코어별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고, 1001동 1호 코어, 1002동 2호 코어, 1003동 1호 코어, 1004동 1,2호 코어, 1005동 1호 코어, 1006동 2호 코어, 1007동 1호 코어, 1008동 1,2호 코어, 1009동 1, 2호 코어에 1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04동 동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계단)는 데크(GL+42,50)에서 데크상부(GL+47,00)까지 운행되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0동 서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계단)는 데크(GL+42.50)에서 데크상부(GL+47.00)까지 운행되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02동 동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승강기)는 주민공동시설(GL+47.00)에서 데크상부(GL+52.00)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09동 서측에 설치되는 외부코어(승강기)는 주민공동시설(GL+47.00)에서 데크상부(GL+52.00)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레벨로 인하여 주동과 연결된 주차장은 2개층입니다.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됩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1동과 1005동 사이, 1002동과 1003동 사이로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1001동, 1005동, 1002동 1003동 등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휀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외부 코어

무인택배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_에듀 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카페, 코인세탁실, 관리사무소)이 1006동, 1009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슬리안센터_스포츠 시설(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GX, 멀티룸,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사우나(남,여), L-다이닝 등)이 1006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 및 로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 1005동, 1006동 사이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	• 경로당이 1009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설	• 게스트하우스가 1002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내부 복도를 통해 지상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측 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1001동 지상 1층 전면 인근에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설	• 1002동, 1003동, 1009동, 1010동 지하층에 물탱크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주문주 1개소 및 단지 부출입구 인접하여 부문주 1개소, 보행자 출입구-2와 인접하여 부문주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주 및	● 주문주, 부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실	● 주출입구에 경비실이 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가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출입구에는 주차차단기 단독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 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A, 84B, 84C, 84D, 84E 단위세대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공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기본제공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확장지급, 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실 시공 시 세대 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단차부(발코니/욕실/현관 등)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의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 구성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에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됩니다.
- 단위세대의 강마루는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패턴지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표면재의 변형, 하지 비틀림 등 우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거실 우물천장 몰딩 디자인 및 규격(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및 위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목창호(침실 및 욕실도어)의 프레임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목창호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단위세대의 침실 내부에 위치한 SD도어는 도장마감으로 적용됩니다. (84B, 84F)
- 단위세대의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 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됩니다.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의 타일(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마감의 적용부위의 나누기도 및 줄눈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이음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자재는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의 가구(일반, 주방)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 설치한 마감재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 설계변경(구성, 설치위치, 마감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실외기 및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일부 평형은 공간구성에 따라 보일러 점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	• 각 단위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단위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고정지지대는 발코니 창문 외부에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난사다리	● 필로티 상부에 있는 2층 세대는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고, 대신 완강기를 통하여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평형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제공유무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립세대의 가구는 확장형과 유상옵션품목의 조합으로 설치되었으며, 비확장형 가구의 수납양과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 및 유상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설치, 전기배선 등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가구(일반, 주방, 욕실)마감, 규격, 구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일반, 주방, 욕실)의 설치부위의 노출되지않은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가 미 시공됩니다.
		● 가구류의 하드웨어, 액세서리,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 가구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어있는 거울(현관, 침실, 욕실 등)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비확장형(기본형) 선택시 미 제공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판은 물턱이 없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가 적용되는 상부장의 내부에 주방 자동식 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싱크장(싱크볼이 적용되는 하부장) 내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일반 주방하부장과 깊이가 상이합니다.
	• 싱크장 내부에 온수분배기 가림판이 설치되며, 온수분배기 설치 위치에 따라 가림판의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아일랜드장은 가구 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며,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84B, 84타입은 주방창 미적용으로 싱크볼 상단의 상부장 하부(지판)에 LED 주방조명 등이 설치됩니다.
	• 84C타입은 주방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주방 상판 매입형 콘센트가 미 적용됩니다.
	• 84E타입은 현관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현관창고가 미 적용됩니다.
	• 시스템선반(기본제공, 옵션선택품목 포함)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84A, 84B, 84C, 84D, 84E, 84F 타입)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3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 세대 내 창호는 평형별로 설치되는 브랜드가 다르니 MH 건립세대를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유리난간이 설치되고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문틀 등에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됩니다.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사양 및 수전 높이,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항,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 일부 구간에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안내 -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 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에 관한 상세 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유상옵션 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추가 유상옵션 품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유상옵션 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유상옵션 - 설치 위치 및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에 관한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옵션 선택 이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삿옵션 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 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미 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안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중문

- 현관 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개폐 방향은 해당 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천장 몰딩, 가구, 디딤판, 벽 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경량 벽으로 마감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 부위 신발장 케이싱 너비가 변경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주택과 다르게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디테일 등)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붇박이가구류

- 불박이 가구류 옵션 선택 시 가구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가 미 시공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 옵션 미 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규격 및 수납형태, 내부구성은 평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84F 타입은 안방 내 하햣식피난구 진입동선의 간섭으로 안방 불박이장 옵션 미 적용됩니다.
- 드레스룸 스타일업의 옵션 선택 시 고급형 매입등이 적용됩니다.
- 84D 타입은 평면 특성상 안방 붙박이장 옵션 미 적용 됩니다.
- 84D 타입의 안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안방 전면벽체 마감은 시트판넬 / 유리 슬라이딩도어(브론즈 사틴 유리마감)이며, 내부는 디자인월 마감 위 쇼룸형 시스템가구로 구성됩니다.

• 마감자재류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은 타입별 주방가구 설치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이음부분이 노출되거나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 시공시 색상 및 무늬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타일의 재료적 특성상 각장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에 시공되는 세라믹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의 디자인월 패널의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마감형의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 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①, ②은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거실 스타일업_벽마감형의 히든도어의 상세 및 디자인, 하드웨어(핸들, 정첩 등)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히든도어에 별도의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바닥마감형 옵션은 공용공간(거실, 복도, 주방)에만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바닥마감형 옵션 선택 시 침실 마루와 연결부위(실별 목창호 하단)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욕실 스타일업 마감고급화 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특성상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마감고급화 옵션 선택시 적용되는 타일은의 자재특성상 색상,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의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시 삭제되는 복도팬트리 벽체 마감의 차인액은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에 반영됩니다.
- 84A 타입의 다이닝룸 스타일업 옵션과 조명스타일업 옵션 중복 선택 시 주방 간접조명형 우물천장이 포함됩니다.
- 84B 타입의 주방 장식장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시 주방장식장으로 견쳐지는 벽제 마감의 차인액은 주방장식장에 반영됩니다.
- 84C 타입의 주방 장식장 옵션과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 중복 선택시 삭제되는 벽제 마감의 차인액은 주방 장식장 옵션에 반영됩니다.
- 84F 타입의 거실 우물천장은 평면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실 아트월 전면부(1면)으로 구성됩니다.

• 가전기기류

- 옵션 가전은 B2B 전용 모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B2C 모델과 외형은 같을 수 있지만, 내부 스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는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은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주방상판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 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하부장(여닫이 도어설치, 내부 선반 1개소)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냉장고 선택 시 팬트리장(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로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 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제품 조합은 해당 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해당 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 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제품 조합에 따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도어 오픈방향은 고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 개선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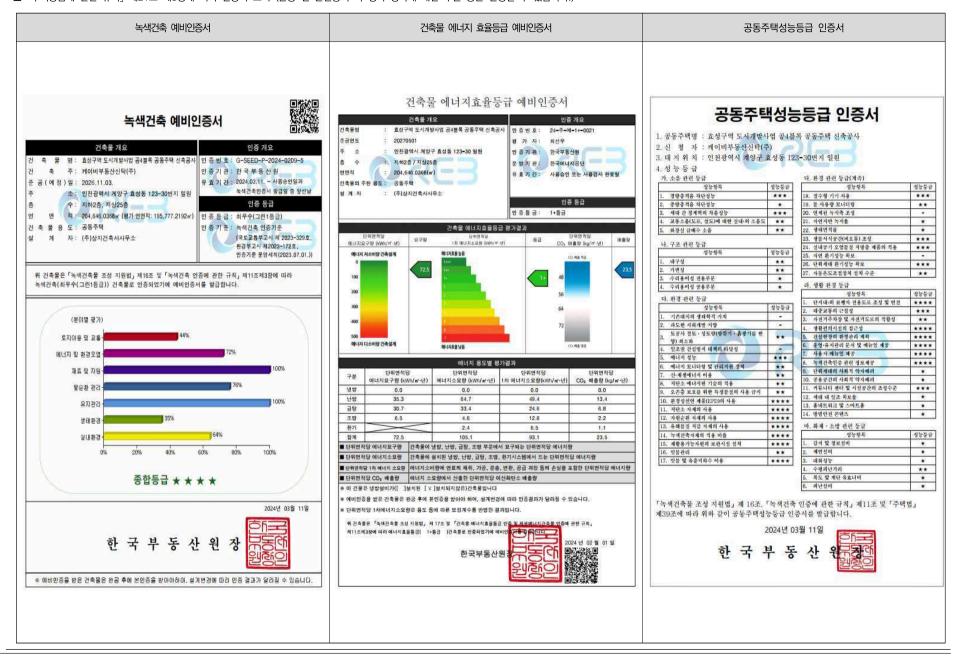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관리예치금 으로 부과하며, 관리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강연실, 건강진료센터, 미팅룸, L-다이닝, 라운지, 세탁실, 활동실, 스트리밍 시네마, 키즈카페, 북카페, 독서실, 맘스테이션, 게스트 하우스,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룸, 코인세탁실, 샤워실, 탈의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때 하자의 판정기준, 보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준공 전 본인증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수준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 급수펌프(부스터펌프),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단위세대 내 현관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단위세대(직부등 및 식탁등의 간접조명,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간접조명 제외), 공용부, 부속동(간접조명 및 일부 인테리어성 조명 제외) • 안정기 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LED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을 사용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속동(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단위세대 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 사워기, 욕조, 주방수전)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공개 합니다.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204(g)	MMI VII등급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3m	2.7m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4-101-0002100호	오천이십오억구백오십일만팔천원 정 (₩502,509,518,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이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은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고, KB부동산신탁㈜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본 계약 상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 그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KB부동산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제이케이도시개발 및 수탁자 KB부동산신탁㈜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 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KB부동산신탁㈜이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제이케이도시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사업주체(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융기관 미 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 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KB부동산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공동주택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KB부동산신탁㈜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	LIOI	OI	\ / A T	별도)
(닌뒤	74.	VAI	91年)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명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선진이엔지	(주)제이알씨엠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금 액	4,786,857,000원	761,844,136원	1,069,081,818원	71,000,000원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신탁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KB부동산신탁(주)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22, 306호(청라동, 미라클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22~25층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법인등록번호	120111-0930174	110111-1348237	110111-0014764

- 분양대행사 : 씨엘케이주식회사

■ 사이버 견본주택: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09/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31-44번지 (☎ 1670-3053)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 비치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